#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7 발의연월일: 2020. 12. 9.

발 의 자: 안호영·강은미·송옥주

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

임종성 · 장철민 · 주철현

한병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질병 예방에 취약한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제2장에 제6절(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 제34조의13(야생동물의 검역)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의 대상 병원체는 야생동물 검역대

상질병으로 한다.

- 제34조의14(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5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5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함)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의15(지정검역물) 수입 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 2. 뼈·살·가죽·알·털·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3.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제34조의16(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34조의16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 2.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 몰등을 할 수 있다.

-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 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 매몰등을 할 수 있다.
-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의18(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

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 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 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 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4조의19(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 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 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질병의 병 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 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 제34조의20(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21(수입검역 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9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 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2(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 1. 제34조의19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 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 정된 때
  -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지정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 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 우
-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23(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 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 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4조의24(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9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 1. 제34조의18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2.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3.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②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7제6항을 준용한다.
- 제57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 제64조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을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2제6항, 제34조의23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34조의16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 9.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 10. 제34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 11. 제34조의18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 12.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13. 제34조의20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14.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70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34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 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 10의3.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제7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 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
	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실
	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
	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u>&lt;신 설&gt;</u>	제34조의13(야생동물의 검역)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야
	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
	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에 대한 검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의 대상 병원체는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으로 한다.

제34조의14(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의사로 서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 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5에 따른 지

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 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 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 15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함)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점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4조의15(지정검역물) 수입 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 2. 뼈・살・가죽・알・털・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 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3.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먹이, 기구,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물건
- 제34조의16(수입금지) ① 누구든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진료와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물 질병의 매개·전파 방 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고시 한 것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 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 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34조의16제1항에 따라 수 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 2.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경우
-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 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

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 야 한다. 다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 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등 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 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 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

역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야생 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 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 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 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 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 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의18(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19(수입검역) ① 지정검 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 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 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 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 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

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제34조의20(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1(수입검역 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제 34조의19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 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2(검역시행장) ① 수입 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 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 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 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4조의19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

- 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때
-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 상·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 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다.
- ③ 지정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 지 아니한 때

-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검

   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3(보관관리인 등의 지

- 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징수한 경우
-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

   된 경우
-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한다.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 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 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 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 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4(불합격품 등의 처분)

-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 19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경우에는 그물건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소각·매몰등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직접 폐기할 수 있다.
- 1. 제34조의18제2항에 따른 위

   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2.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 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 는 것
-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것으로 인정되는 것
- ②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 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 기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8. (생략)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
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
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
역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7제
6항을 준용한다.
∥57조(포상금)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
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
역물을 수입한 자

9. ~ 15. (생 략)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
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u>제36조제1</u>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

1. ~ 7. (생 략) <u><신 설></u>

<신 설>

여야 한다.

9. ~ 15. (현행과 같음)
제64조(청문)
<u>시장·군수·구청장,</u>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
제34조의22
제6항, 제34조의23제3항 및 제4
항, 제36조제1항,
제68조(벌칙)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의16제1항 본문을 위
반하여 수입한 자
9. 제34조의17제1항에 따른 반
송 또는 소각 매몰등의 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신 설>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0. 제34조의17제5항을 위반하 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 11. 제34조의18제1항 본문을 위 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 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 12.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 른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 거나 수입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13. 제34조의20제1항 본문을 위 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14.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소 각 · 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_\_\_\_\_\_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4조의22제1항 각 호

11. ~ 16.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u><신 설></u>

7. (생략)

③ • ④ (생 략)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자

10의3.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보관관리인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1. ~ 16.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제34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거부 또는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 7.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